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16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	3
가. 개정안의 입법 취지	3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4
2. 조문별 검토	5
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규정 신설 (안 제3조제1항제21호·제22호·제9조의2 신설, 제12조제1항제5호, 제20조제6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목, 제25조제2항, 제27조의 2제1항제1호 및 제32조제1항)	5
나.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 규율체계 개편 (안 제8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22
다. 제재시스템 강화 (안 제29조제1항제7호 신설)	26
라. 기타 (안 제3조제1항제19호, 제11조의4·제12조제1항제15호 신설)	29
[참 고]	4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은석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0.

다. 회 부 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은행 중심의 규제와 사전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데 반해, 기존의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는 전통적 거래 방식 대비 저비용과 저규제의 특성을 가지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여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최근 4년간 외환범죄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 관련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 및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의 편의 증진, 외환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에 관해 규율하여, 이를 통해 외환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총괄

가. 개정안의 입법 취지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은행을 중심으로 국경 간 거래 건전성을 관리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은행에 거래 목적과 신고대상·신고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면서, 개별 거래 정보는 모두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획득된 정보는 과세·금융당국에 제공되어 탈세 및 자금세탁 방지 등에 활용 중임.

그러나 2010년대부터 가상자산의 등장과 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 도입으로 국경 간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전통적 방식인 은행을 통한 국경 간 거래보다 가상자산·핀테크 방식 등 대안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¹⁾.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적발된 외환범죄 금액 11조원 중 가상자산과 관련된 금액은 9조원으로 전체 외환범죄 금액의 81.3%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업자가 엄격한 확인 절차 없이 마약 구매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적발²⁾되기도 함.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핀테크 거래제도를 정비하고, 이외에도 부

1) [참고 1] 참조

2) 동아일보, '피싱-도박 조직에 가상계좌 7만개 넘겨 11억 부당 이익', 2024. 8. 21.

담금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규정 신설로,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가상자산이체업을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하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 위반 등 사유 발생 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1호·제22호·제9조의2 신설, 제12조제1항제5호, 제20조제6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목, 제25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2조제1항).

둘째,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 규율체계 개편으로, 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를 “해외지급결제업”으로 새롭게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셋째, 제재시스템 강화로, 지급절차를 위반한 지급·수령 등에 대한 형벌 제재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7호 신설).

넷째, 기타 “자본거래” 정의 명확화, 사실상 폐업사업자에 대한 직권 취소 및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등의 내용을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9호, 제11조의4 및 제12조제1항제15호 신설).

2. 조문별 검토

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규정 신설

(안 제3조제1항제21호·제22호·제9조의2 신설, 제12조제1항제5호, 제20조제6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목, 제25조제2항, 제27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32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 정의(§3)① - (생략) (제1호~제20호) <u><신설></u> <u><신설></u> <u><신설></u>	○ 정의(§3)① - (생략) (제1호~제20호) - <u>“가상자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1호)</u> - <u>“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자(제22호)</u> ○ 가상자산이체업자의 등록 등(§9의2) - <u>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체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갖추어 미리 기재부장관에게 등록(제1항)</u> - <u>가상자산이체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가상자산이체업을 폐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부장관에 미리 그 사실을 신고(제2항)</u>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포섭함에 따라 법 체계 정비>	
○ 인가의 취소 등(§12) - 기재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9조에 따른 등록·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 포함)의 업무 제한 또는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할 수 있음(제1항 각호 외의 부분) - (생략) (제1호~제4호)	○ 인가의 취소 등(§12) - (현행과 같음)(제1항 각호 외의 부분) - (생략) (제1호~제4호)

현행	개정안
5.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생략) (제5호의2~제14호) - (생략) (제2항~제5항) ○ 보고·검사(§20) - (생략) (제1항~제5항) - 기재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u>한은총재</u>, 금감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위탁 가능(제6항) ○ 국세청장 등에게 의 통보 등(§2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감원장 또는 수은행장에 직접 통보하거나 한은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감원장 또는 수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음(제1항) - (생략) (제2항) ○ <u>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u>(§22) (생략) ○ 사무처리 등(§25) - (생략) (제1항) - 기재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분석하는 기관을 지정·운영 가능(제2항) ○ 벌칙(§27의2)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함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5.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생략) (제5호의2~제15호) - (현행과 같음) (제2항~제5항) ○ 보고·검사(§20) - (현행과 같음) (제1항~제5항) - 기재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u>금융위원장</u>, <u>한은총재</u>, 금감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위탁 가능(제6항) ○ 국세청장 등에게 의 통보 등(§2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u>가상자산의 이체</u> 등에 관한 자료를 <u>금융위원장</u>, <u>국세청장</u>, 관세청장, 금감원장 또는 수은행장에 직접 통보하거나 한은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u>금융위원장</u>, <u>국세청장</u>, 관세청장, 금감원장 또는 수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음(제1항) - (현행과 같음) (제2항) ○ <u>외국환거래 등의 비밀보장</u>(§22)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사무처리 등(§25) - (현행과 같음) (제1항) - 기재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 <u>가상자산 이체</u>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분석하는 기관을 지정·운영 가능(제2항) ○ 벌칙(§27의2)①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현행	개정안
다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u>외국환업무</u>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해 <u>외국환업무</u>를 한 자를 포함) - (생략) (제2호·제3호) - (생략) (제2항) ○ 과태료(§32)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u>외국환업무</u>를 한 자 - (생략) (제2호~제6호) - (생략) (제2항~제5항)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u>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이체업</u>을 한 자(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해 <u>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이체업</u>을 한 자를 포함) - (현행과 같음) (제2호·제3호) - (현행과 같음) (제2항) ○ 과태료(§32)①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 1.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u>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이체업</u>을 한 자 - (현행과 같음) (제2호~제6호) - (현행과 같음) (제2항~제5항)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³)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자”의 개념을 「외국환거래법」의 정의규정에 신설하면서(안 제3조제1항제21호·제22호),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이체업자”가 그 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제를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또한 개정안은 기존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규정되지 않았던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동 법에 규율함에 따라, 가상자산이체업자가 가상자산 이체내역을 매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25조제2항), 해당 정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 통보하며(안 제21조제1항), 등록 위반, 보고·검사 등에 불응할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안 제12조제1항제5호, 제2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2조제1항), 검사·감독 및 제재 권한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도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현행법⁴⁾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
- 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

외화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법의 적용범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확산으로 거래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기하였듯 전통적 방식인 은행을 통한 국경 간 거래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행법 체계 하에서 은행 중심으로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관리해왔던 기획재정부는 입법적인 공백으로 인해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 관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임.

이에 개정안은 상기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변화

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1.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貸借)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3.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하는 거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가상자산 모니터링 규정을 「외국환거래법」에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는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를 원활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⁵⁾. 동 법의 적용 대상은 외국환, 외국환거래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국경 간 거래·지급·수령 등 행위 등으로 규정하는 등 그 적용범위를 일반적으로 ‘외국환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외거래성을 가진 거래’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⁶⁾은 기본적으로 “외국환”으로 볼 수 없는바, 동 법에 가상자산 모니터링 규정을 두는 것이 법체계 정합성 차원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외국환에 포섭되지 않는 가상자산이 동 법에 포섭됨에 따라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20조(보

5)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적절한 외환거래 조정과 관리’를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구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관리’하는 것을 목적 조항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 현행법 제정 시 삭제됨.

6) 가상통화는 발행인이 없고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채권이나 물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산권이라도 표현도 사용할 수 없음(출처 : 정순섭, “가상통화의 법률문제”, BFL 제89호, 2018, 11면). 또한, 가상자산은 지급수단, 증권, 파생상품, 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음.

고·검사),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제25조(사무처리 등), 제27조(벌칙), 제32조(과태료) 등의 규정도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새로이 규율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담김.

실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⁷⁾이 2023

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6.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년 제정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동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는 등 개정안에서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음.

또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이하 「특금법」)에서도 금융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제16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통화 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 제20조(몰수·추징), 제21조(양벌규정), 제22조(과태료)

8) 「특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내송금
 - 가. 송금인의 성명
 -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 다.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2. 해외송금
 - 가. 송금인의 성명
 -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 다.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 라.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

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정보수집, 신고 말소·정지, 제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안에서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음.

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벌칙),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9조(양벌규정)

[‘가상자산 모니터링’과 관련된 개정안·타법 비교]

구 분		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특금법
정의· 대상	가상자산	§3①21.	§2 1.	§2 3.
	가상자산사업자	§3①22.	§2 2.	§2 1. 하
	가상자산이체(이전)업*	§9의2	-	-
가상자산 국외적용		미규정	§3	§6
주무부처		기재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등록· 신고	등록·신고	§9의2	-	§7
	취소·말소·정지	§12①5.	§13, §15	§7, §15
보고·정보활용		§20⑥, §21①, §25②	§9, §12, §13, §14, §16	§4, §4의2, §5의3, §8, §10, §10의2, §11, §12의2, §15의2
제재	벌칙	§27의2	§19	§16, §17, §18
	몰수·추징	§30	§20	미규정
	양벌규정	§31	§21	§19
	과태료	§32	§22	§20
	과징금	-	§17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이전업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포함

* 「특금법」은 제2조제2호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

다만, 「외국환거래법」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이 ‘대외거래성을 가진 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상자산 거래의 대외거래성에 방점을 둔다면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이전과 관련된 규정을 둘 실익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음. 법원은 한국과 중국 간 송금영업을 수행하면서 국경 간 송금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한 사안

에서 미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하기도 하였음⁹⁾.

그러나, 외국환거래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나 조세회피방지, 불공정거래 적발의 효율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규제 장치를 동원하는 것은 동 법의 목적 등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¹⁰⁾ 특히, 법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¹¹⁾

참고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EU)·영국·미국·일본·싱가폴 등은 ‘스테이블 코인¹²⁾’을 외환과 유사하게 간주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기능별 규제 원칙에 따라 규율하는 추세임¹³⁾. 다만, 개정안은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포괄적으로

9)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8358 판결. 다만 동 판례를 고려하면 현행 법령만으로도 가상자산 송금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할 수도 있음.

10) 정순섭·주성환,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체계와 신종 거래의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vol 17 no.2, 2024, 61면.

11) 「외국환거래법」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需給)의 기반 조성 및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가상자산 가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 가치를 법화나 국채와 같이 안전자산에 연동시키는 코인

13) [참고 2] 참조.

규정되어 있는 ‘가상자산’ 전체의 이체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므로 해외 입법례와 부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둘째, 가상자산이체업 등록 등 규제 신설이 중복규제에 해당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②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에 한정), ③ 이 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와 임원 포함), ④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 이전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해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 제공의무 등이 부과되고 있음.¹⁴⁾

또한, 최근 「특금법」상 신고를 불수리하는 사유를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상황임.¹⁵⁾

이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의무와 정보제공 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고 신고 관련 부담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환거래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재부에 대한 가상자산이체업 등록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중복규제로 작용하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 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를 제공할 것
4. 제2호에 따른 정보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제공하고, 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것

15)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833호)

- 개정안은 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청서 등을 거짓기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하고,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안 제9조의2의 “가상자산이체업”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가상자산이체업은 개정안의 핵심개념인데 개정안에서 이에 대한 정의와 요건을 전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¹⁶⁾. 특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이를 위해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아닌 분산원장상 데이터의 형태로 형성되어 관리되므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¹⁷⁾ 가상자산이 기록되는 분산원장은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노드(node)들의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거래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인데, 분산원장에 기록된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가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된다고 볼 근거는 없기에 ‘장소적 관점’보다는 ‘인적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¹⁸⁾

다음, 개정안의 “가상자산이체업을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16) 가상자산이체업자에 대한 정의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17) 가상자산이 콜드월렛(cold wallet, 별도 하드웨어 등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 없이 작동 가능한 가상자산 지갑)에 저장되어 보관되는 경우라면 해당 콜드월렛의 물리적 소재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핫월렛(hot wallet,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가상자산지갑)에서 저장되어 보관되는 경우는 판단하기 어려움.

18) 정순섭·주성환,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체계와 신종 거래의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vol 17 no.2, 2024, 69-70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¹⁹⁾와 실질적으로 의미가 동일하므로 타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을 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도록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²⁰⁾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체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법률에 그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가상자산 모니터링 규정을 동 법에 규정하더라도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법 제2조(적용 대상)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그 밖에 이와 관련되

1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하나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전송하는 등 이용자 상호 간에,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간에 또는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특금법」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는 행위”에 가상자산이체업이 포섭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당초 법 제 2조는 ‘외국환’의 거래와 관련된 적용 대상을 규정한 것이지 가상자산이체에 대한 적용 대상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다음, 안 제3조제1항제21호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인용하면서, “가상자산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당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정의에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안 제21호 후단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²¹⁾.

다음, 안 제12조제1항제5호는 가상자산이체업 등록사항 변경·폐지 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제한·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법적 효과를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²²⁾”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가상자산이체업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이체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의 인가취소 등 규정이 미비한바 이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다음,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업무 위탁 및 자료 통보 대상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인데, 금융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

21) 기획재정부도 이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개진함.

2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법 제10조제1항에 정의되어 있음)

이므로 업무 위탁 및 자료 통보 대상에 “금융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음, 안 제21조는 안 제25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된 가상자산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 위원장²³⁾에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게 안 제21조의 제목도 “금융위원회 등에게 통보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음,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동 법에 포섭할 경우 법 제30조(몰수·추징)의 몰수 대상도 추가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3)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재위탁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나.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 규율체계 개편

(안 제8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8) - (생략) (제1항·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재부장관에 등록해야 함. 이 경우 <u>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u>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u>여행자수표의 매입</u>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 (생략) (제4항~제7항) ○ 인가의 취소 등(§12) - 기재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9조에 따른 등록·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 포함)의 업무 제한 또는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할 수 있음(제1항 각호 외의 부분) - (생략) (제1호~제3호) 4. <u>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u> - (생략) (제5호~제14호) - (생략) (제2항~제5항)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8) - (현행과 같음) (제1항·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재부장관에 등록해야 함. 이 경우 <u>외국환업무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u>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u>여행자수표의 매입(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u> <u><삭 제></u> 3. <u>전자적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를 위한 지급 및 수령, 결제 및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이하 “해외지급결제업”)</u> - (현행과 같음) (제4항~제7항) ○ 인가의 취소 등(§12) - (현행과 같음)(제1항 각호 외의 부분) - (생략) (제1호~제3호) 4. <u>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u> - (생략) (제5호~제15호) - (현행과 같음) (제2항~제5항)

개정안은 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를 “해외지급결제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안 제8조제3항),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²⁴⁾)가 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²⁵⁾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핀테크²⁶⁾는 기술(Technology)과 금융(Finance)의 결합을 의미하며, 디지털금융 또는 금융의 디지털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²⁷⁾. 법 제8조제3항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도는 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를 규정하는 것으로 2017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됨. 법 개정 이전에는 금융회사등²⁸⁾이 아닌 자는 환전업무만 할 수 있었으나, 2017

24) 법 제8조제4항에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로 정의되어 있음.

25) 예시 : 환전업자가 소액송금업을 영위하는 경우(자료 : 기획재정부)

26) ‘핀테크’라는 용어 자체는 1993년 씨티(Citi)가 설립한 ‘금융서비스기술컨소시엄’(Financial Services Technology Consortium)의 창설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함(Eilene Zimmerman, “The Evolution of Fintech”, New York Times, April 6, 2016).

27) 정순섭, “금융법”, 홍문사, 2023, 363면.

28)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년 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등이 아니어도 환전업 외에 외화이체업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동 규정이 처음 규정될 당시²⁹⁾에는 혁신을 위하여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정의하였는데, 오히려 모호한 정의로 인해 업계발전이 저해되었다는 입장임.³⁰⁾

이에 개정안은 기존 환전업(제1호), 소액해외송금업(제2호) 및 기타 전문외국환업³¹⁾(제3호: 전자화폐업, 선불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일반 환전업(제1호), 해외지급결제업(제3호: 온라인·무인기기 환전업, 소액 해외송금업, 전자화폐업, 선불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으로 개편하고자 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를 “해외지급결제업”으로 새로이 정의하고 「해외지급결제업무 운영 지침」(기획재정부고시)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8. 외국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 29) 2017년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은 정부가 제출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557호)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공포되어 규정된 것임.

30) [참고 4]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 규율체계 개편필요성’ 참고

3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을 제정하여 각 업권별 기능에 부합하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³²⁾

다만, 개정안은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 제8조제3항 후단에서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주요내용을 기획재정부고시가 아닌 시행령 규정의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³³⁾.

둘째, 안 제8조제3항이 개정될 경우 “해외지급결제업”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12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현행법 하에서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포섭하여 등록취소를 하였음. 그러나 ‘등록취소’라는 침익적 행정작용을 같은 항 제3호의 포괄규정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임.

32) [참고 3]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 규율체계 개편방안’ 참조.

33)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실질적인 규제내용을 대부분 기획재정부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규율하고 있고, 법과 시행령은 선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체계적 정합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법령 규정 개편방안 연구”, 2022, 148면.)

다. 제재시스템 강화

(안 제29조제1항제7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벌칙(§29)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함 - (생 략) (제1호~제6호) <u><신 설></u> - (생 략) (제2항·제3항)	○ 벌칙(§29)①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제1호~제6호) 7. <u>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u> - (현행과 같음) (제2항·제3항)

개정안은 현행 제32조(과태료)제2항제2호에서 “제15조제1항³⁴⁾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강화하여,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허위증빙 등의 방법으로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킬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34) 「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과할 수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제재규정만으로는 이러한 허위증빙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고의·반복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 거래로 부과된 과태료는 2조 3,342억원인데, 그 중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전체 과태료의 66.7%인 1조 5,564억원임.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과태료 처분 통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건수	2	2	20	17	5	1	47
	금액	1	228	8,880	5,933	472	50	15,564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3자지급	건수	1	4	12	18	5	5	45
	금액	9	552	1,266	2,358	2,655	868	7,526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위반	건수	1	-	1	1	-	-	3
	금액	0.3	-	0.3	1	-	-	1.6
해외예금 미신고	건수	-	-	1	-	1	1	3
	금액	-	-	7	-	32	30	69
합 계	건수	4	6	34	36	11	7	98
	금액	10	780	10,153	8,292	3,159	948	23,342

자료 : 기획재정부, 관세청

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고의·반복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또

한 현행법의 형벌 체계³⁵⁾를 감안할 때 개정안은 가장 약한 수준의 제재를 규율하는 것으로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³⁶⁾을 원용하여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을 ‘고의·반복적 행위’의 판단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그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이유는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임.³⁷⁾

35) 제27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제27조의2(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제28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29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120937호)

라. 기타

(안 제3조제1항제19호, 제11조의4·제12조제1항제15호 신설)

현행	개정안
○ 정의(§3)① - (생략) (제1호~제17호) - “해외직접투자” :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거래·행위 또는 지급(제18호 각목외의 부분)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목)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목) - “자본거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제19호 각목외의 부분) • (생략) (가목~라목) •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u>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u> • (생략) (바목) <u><신설></u> ○ 인가의 취소 등(§12) - 기재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 정의(§3)① - (생략) (제1호~제17호) - “해외직접투자” : (현행과 같음)(제18호 각목외의 부분) • (현행과 같음) (가목·나목) - “자본거래” : (현행과 같음)(제19호 각목외의 부분) • (현행과 같음) (가목~라목) •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u>국내에 있는 지점,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국내지사”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본점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내지사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국내지사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u> • (현행과 같음) (바목) ○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11의4)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인가의 취소 등(§12) - (현행과 같음)(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현행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9조에 따른 등록·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 포함)의 업무 제한 또는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할 수 있음(제1항 각호 외의 부분) - (생략) (제1호~제14호) <u><신설></u>	- (생략) (제1호~제14호) -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개정안은 ‘해외직접투자’와 ‘자본거래’의 정의가 일부 중복됨에 따라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안 제3조제1항제19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며(안 제11조의4 신설), 사실상 폐업사업자에 대한 관세청장의 직권취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5호 신설).

현행법 제3조제1항제18호 및 제19호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자본거래”를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정의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는 자본거래의 하위개념임.³⁸⁾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법인이 해외지사를

38)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설치·확장 또는 운영하면서 자금을 수수'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이자 자본거래에 포함됨.

그런데, 현행 정의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엄격한 사전규제³⁹⁾로 인해 국내법인이 해외지사를 설치·확장 또는 운영하고자 할 경우 큰 애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⁴⁰⁾.

이에 개정안은 ‘국내법인이 해외지사를 설치·확장 또는 운영하면서 자금을 수수’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만 포함시키고 “자본거래”(법 제3항제1항제19호마목)에는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엄격한 해외지사 설치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법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도모하기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b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39) 「외국환거래규정」

제9-16조(적용범위) 거주자가 외국에 당해 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이하 “해외지사”라 한다)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및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18조(설치신고 등), 제9-19조(해외지점의 영업기금), 제9-20조(해외사무소의 경비), 제9-23조(해외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 제9-25조(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

40) [참고 5]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개선방안’ 참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⁴¹⁾.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 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원인행위와 결제행위⁴²⁾로 구성됨. 원인행위는 그 성질에 따라 무역거래⁴³⁾, 무역외거래⁴⁴⁾, 자본거래로 구분되는데, 자본거래에는 ‘협회의 자본거래’와 ‘직접투자’ 등이 포함되고, 해외직접투자는 직접투자의 구성요소임.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원인행위 단계에서 자본거래에 대해서만 별도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환거래법」 체계를 감안할 때,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국내법인이 해외지사를 설치·확장 또는 운영하면서 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그 실질이 자본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거래 정의에서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바, 기존 외국환거래법령 체계와 부합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자본거래의 하위개념으로 포섭하고 있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기획재정부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 제9-16조(적용범위) 중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및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자본거래)를 “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 및 영 제8조제2항제1호”(해외직접투자)로 개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자구를 개정하면 개정

41) 「외국환거래규정」 제7-1조(적용범위)는 “자본거래의 신고등에 관하여 제9장(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할 수 있음.

42) 결제행위는 지급과 수령을 의미함.

43) 수출입거래, 비거주자와의 용역거래

44) 여행, 운수, 보험, 투자수익, 정부거래, 기타 서비스거래, 이전거래

안의 취지가 달성될 것으로 보임.⁴⁵⁾

다음, 안 제11조의4의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규정은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24. 3.)에 따라 전체 대상 부담금(61개)에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것임.

그런데 정부가 2024년 10월 제출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⁴⁶⁾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경우에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음.

마지막으로, 사실상 폐업자에 대한 관세청장의 직권취소 규정과 관련하여, 법 제8조제3항제1호·제4항,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전단⁴⁷⁾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의

45) 실제 기획재정부는 상기 검토의견과 동지의 입장에서, 최근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2025. 1. 13.)하고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2025. 2. 10.)하였으며, 「외국환거래법」은 자구만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46) 의안번호 제2205093호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㉞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환전업무 등록,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의 신고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⁴⁸⁾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실상 폐업자가 되었음에도, 타 입법례⁴⁹⁾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세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의 신고

48)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와 달리 행정청의 인가 등에 대한 직권취소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과 별도로 관세청장에게 등록 폐지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실상 폐업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직권취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단순폐업으로 인한 직권취소의 근거규정을 법 제12조제1항의 호로 신설할 경우, 단순 폐업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라 3년 동안 재인가·등록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항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타 입법례⁵⁰⁾에서는 해당 내용을 규정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게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①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19.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u>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u> 이루어지는 <u>사무소의</u>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u>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u>)	마. ----- <u>국내에 있는 지점,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국내지사”라 한다)</u> ----- ----- <u>본점 사이에</u> ----- ----- <u>국내지사의</u> ----- ----- ----- <u>국내지사를</u> ----- ----- ----- -----
바. (생략)	바. (현행과 같음)
20. (생략)	20. (현행과 같음)
<신설>	21. “가상자산”이란 「 <u>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u>가상자산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 설>

② (생략)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
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
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2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외국환업무의

1. -----
-----여행자수표의 매입
(다만,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에 한한다)

<작 제>

3. 전자적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를 위한 지급 및 수령,
결제 및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
도(이하 “해외지급결제업”이라 한

④ ~ ⑦ (생략)

<신설>

<신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

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가상자산이체업자의 등록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체하는 업(이하 “가상자산이체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이체업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가상자산이체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

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

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제8조제2항을</u>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5. 제8조제4항 또는 <u>제9조제3항에</u>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5의2. ~ 14.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제20조(보고·검사) ① ~ ⑤ (생략)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한국은행총재</u>,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생략)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u>----- ----- 5. -----<u>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에</u>----- ----- ----- 5의2. ~ 14. (현행과 같음) 15. <u>제8조제3항제1호에</u> 따른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보고·검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금융위원회</u> 위원장, <u>한국은행총재</u>----- ----- -----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① ----- -----
---	---

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생략)

제25조(사무처리 등)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 가상자산의 이체 등에-----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외국환거래 등의 비밀보장)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5조(사무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령, 가상자산 이체에-----

제27조의2(벌칙) ① -----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3. (생략)

② (생략)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 6. (생략)

<신설>

② 3. (생략)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1. -----제3항, 제9조의2제1항에-----

-----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이체업을-----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의2제2항에-----

-----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이체업을-----

-----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이체업을-----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①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② 3. (현행과 같음)

제32조(과태료) ① -----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u>제8조제4항에</u>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u>외국환업무</u>를 한 자 2. ~ 6. (생략) ② ~ ⑤ (생략)	----- -----. -----. 1. <u>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의2제2항에</u> ----- -----<u>외국</u> <u>환업무 또는 가상자산이체업</u>을----- ----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문 의 처

02)6788-5155

참고 1

가상자산 활용 불법거래 사례 (자료 : 기획재정부)

I. 조세탈루

※ 관세청은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점 악용한 사례 증가

- ☐ '21.4~'22.8월 홍콩 등에 금, 귀금속 등을 중계무역 수출하고 대금(2,039억원 상당)을 대표의 개인지갑에 가상자산으로 수령
- ☐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하거나, 저가의 철스크랩으로 수출단가를 낮춰 신고, 차액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업자를 통해 수령
* 밀수출 998억원, 가격조작 3,743억원, 법인세 탈루 700억원 상당

II. 범죄악용

※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알기 어려워 범죄사실 확인·특정에 어려움

- ☐ 해외 원정 도박꾼들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를 영수한 후 가상자산(테더)을 해외로 전송하여 현지에서 외화로 전환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160억원 상당의 해외 도박자금을 불법 환치지
* ①국내 영업책은 SNS로 '코인 환전' 홍보, 해외 원정도박 고객 모집해 원화 영수
②가상자산 조달책은 국내 영업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즉시 국내에서 확보한 가상자산 테더를 외국에 상주하고 있는 해외 영업책에게 전송
③해외 영업책은 전달받은 가상자산을 현지 카지노 등에서 외화로 환전해 고객에 전달
- ☐ 국내 담배 밀수입 조직이 베트남으로부터 담배 158만갑(원가 29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면서,
 - 국내 거래소에서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입해 베트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대금 지급
- ☐ A는 국내 마약 공급책으로 자금세탁원인 B명과의 해외 거래소에 개설된 지갑주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마약대금을 수금
 - B는 수금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을 자금세탁

참고 2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요국 규제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1 유럽연합

- 기본법에 해당하는 「**EU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R)**」 법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분류와 규율 도입
 - 단일 법정통화에 연계된 경우에만 지급결제 수단으로 허용
 - 금융안정성에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은 시스템 전자화폐(**Significant EMT**)라고 규정, EBA(European Banking Authority)에 감독 권한 부여
 - * (EMT) E-Money Token, 하나의 특정 법정통화에 연계시킨 스테이블 코인 (ART) Asset-Referenced Token, 복수의 법정통화를 포함, 자산집합의 가치에 연계
- 또한, 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정인 「**TFR***」을 별도 제정하여, '25.1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트래블 룰(traveul rule) 적용
 -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송인 및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여 제출 의무
 - * Transfer of Funds Regulation

2 영 국

- '24년 재무부·영란은행·금융감독청(**FCA**)가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마련·발표하고 의견수렴 중
 - 하나 또는 복수의 법정통화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Fiat-Based Stablecoin)만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규제대상으로 편입
 - * "금융서비스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금융기술이 핀테크와 연계하여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 내) 영국 내에서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을 **Regulated Stablecoin**이라고 명명
 - (해 외) 금융감독청이 인가한 해외결제 대행업자가 영국 국내법에 따라 발행한 코인은 **Approved Stablecoin**이라고 명명

- 외국 스테이블 코인이 **외환거래에** 사용될 경우 금융 안정성을 위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한 있음
 - *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GBP로 변환하는 거래는 외환거래(환전)으로 간주
 - ※ 해외 발행자는 영국에서 운영시 영국의 라이선스 및 AML 규정 준수 필요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감독청이 아닌 **영란은행**이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감안하여 **건전성 감독** 수행

3 미 국

- 단일법령이나 스테이블 코인에만 적용되는 **별도법령은 없으며**, 재무부(OFAC*, FinCEN**), FRB, SEC 등 연방기관 연합을 통해 감독
- (FinCEN) 「**은행비밀보호법(BSA)**」에 의거하여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간 거래 감독 수행
 - 국경간 송금이나 스테이블 코인과 화폐간 전환에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운영자는 BSA에 따라 **송금업체**로 간주
 - 스테이블 코인이 한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 변환시 **외환거래**로 간주하며, 외환거래나 국경간 송금을 수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와 거래소는 **FinCEN에 MSB***로 등록 필요
 - * Money Services Business: 1일 기준 인당 1천불 이상의 화폐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환전, 수표·여행자수표 추심, 송금수표(money order) 판매 등 포함
 - 해외 발행자도 **FinCEN에 MSB**로 등록하고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미국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래 차단** 가능
- (OFAC) 스테이블 코인 결제의 **미국 제재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특히 **제재 우회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조사·적발 강화
 - *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는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재 대상과의 거래 지원 혐의로 조사·처벌 (Bittrex 사례 등)
 - 또한, **미국인이 DeFi 플랫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경우 **미국 제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침 발표

4 일 본

- 「외국환 및 대외무역법(FEFTA)」, 「결제서비스법」 등을 통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외화 거래에 준하여 규율
 - ※ 다만, 일본은 외환자유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로서, 외환법령상 자본거래 등을 “필요시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평시 규제는 사실상 없는 상황
-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하는 회사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국경간 환전 또는 송금 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라이선스 필요
 - 특히, 일본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외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자신의 코인이 일본인 관련 결제·송금에 사용시 일본의 외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감독 및 보고의무 부과
 - 일본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외화로 변환시 외환거래로 간주
- 스테이블 코인을 양도하는 거래자에 대하여 거래성격·가액·거래 상대방 등을 재무부 또는 금융청(FSA)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음
 -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통해 자본의 급속한 이동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변동성이 심각한 경우 자본통제에 준하는 규제 대상

5 싱가포르

- 스테이블 코인이 외환과 관련된 국경간 결제 또는 송금에 사용되는 경우 「지불서비스법(PSA)」와 기타 통화청(MAS) 지침 적용
- USD 또는 EUR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의 국경간 거래는 외환거래로 간주하여 MAS의 규제대상에 포함
 - 해외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또는 송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싱가포르 외환규정 적용되며, 해외 발행자는 필요시 MAS 보고
 - ※ 금융안정성을 위반할 수준의 대규모 국경간 자본이동은 MAS 승인·감독 대상
- 국경간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PSA에 따라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외환거래 관련 MAS 규정 준수 의무 보유

1. 추진배경

- '15년 이후 핀테크 외환서비스가 도입되며, 양적 성장 지속
 - 다만, 업무영역이 불분명하고, 불법거래에 취약해 업계 전반의 신뢰성 부족 → 他 업권과 협업을 통한 추가 성장·혁신 저해

2. 개편방안(案)

- ① **(업무범위·방식)** 업무의 실질을 고려하여 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를 '해외지급결제업'으로 새롭게 정의*

* (現) ①환전업, ②소액해외송금업, ③기타전문외국환업(PG업, 전자화폐업, 선불업)
 (改) ①일반환전업, ②해외지급결제업 (온라인·무인기기 환전업, 소액해외송금업, PG업, 전자화폐업, 선불업, 결제대금예치업<신설>, 전자고지결제업<신설>)

- 각 업권별 기능에 부합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해외지급결제업무 운영 지침'<기재부고시> 제정)

* (예) PG의 국경간 지급 대행이 가능한 경상거래의 범위와 요건 등 규정

- ② **(검증·모니터링)** 고객·거래확인 강화, 모니터링 체계 등 개편

- 은행 수준의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활용해 고객확인 절차 강화

* KYC, ALM/CFT 체계 강화를 위한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 (핀테크협회)

- 복수업종 겸업시 업종별 정산계좌 분리, 한은 보고대상을 최종 고객의 거래정보까지 확대하고 국세청 등 통보주기 단축(분기→월)

- ③ **(소비자보호)** 고객 자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장치 의무화

- PG업에 대해 소액송금업 수준의 이행보증금(3일분 지급액) 부과
- 예약 환전·송금시 원화 先예치 고객자금에 대한 보호 근거 신설

- ④ **(제재 거버넌스)** 도입당시 누락된 소액송금업의 제재 거버넌스 구축

※ 제재 권한을 <1안>관세청, <2안>금융위(금감원 재위탁)에 위탁하여 수행

참고 4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 규율체계 개편필요성 [자료 : 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의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중 동항제1~2호 환전업과 소액해외송금업은 법령상 정의, 업무범위 및 감독규정이 명확**

* 외국환거래법(제8조제3항1~2호), 동법 시행령(제15조~제15조의4, 제17조의2~제17조의4, 제37제1항·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절, 제5절(제2-28조~제2-37조)

○ 반면, 동항제3호에 따른 기타전문외국환업무는 동법 시행령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15.6월, Payment Gateway, PG)과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19.5월)과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 포괄 규정

- 위임 하위규정(제6절, 제2-39조)에서도 ‘전자금융법상 업무와 관련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으로만 규율되어 업무범위가 모호

* 외환법령상 별도 외환건전성 요건이 없어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 등록 확인, 전금법령상 경영지도기준 심사 거쳐, 기재부는 ‘외국환업무 등록증’ 발급

< 기타전문외국환업자(PG업자)의 자의적 영업 사례 >

♦ (무역거래) 전자상거래가 아닌 일반 무역거래의 수출입대금 결제 위한 계좌이체를 PG 명의의 계좌 통해 송금 대행

* (비교) 금융위는 국내 상품·용역거래 위한 계좌이체 대행을 전자금 융법상 PG 업무로 인정

♦ (체제·유학)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에 의거, 지정거래은행 통해 관리하는 해외체제·유학 경비를 입증서류 확인없이 송금 대행

♦ (이전거래) 선교자금 등 증여성 자금을 PG 명의의 계좌 통해 송금

□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건전성 제고 등 국경간 지급의 특수성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업계 혼선과 불법거래 악용사례** 발생

※ 국경간 지급은 ①거래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②이종통화간 환전 매개로 외국환의 유출입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국내거래 보다 강화된 건전성 규제 필요

* PG업의 평균 거래액/정산기간 : (국내) 27만원/2~3일 (국경간) 600만원/12일

⇒ **업계 신뢰성이 저하되어** **他업권과 협업 등 추가 성장과 혁신을 저해**

* (예) 소액송금업 영업용 자금정산을 위해 시중은행과의 협력이 필요하나, 국내외 AML/CFT 규제 우려해 주요 국내은행은 취급 거부(→ 대부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이 취약한 필리핀계 외은지점(75%) 통해 처리)

참고 5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개선방안 [자료 : 기획재정부]

1. 추진배경

- 지나치게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정의·신고절차로 국민 불편 및 의도치 않은 위반행위 유발

* (예) 해투법인에 1년 미만으로 금전대여한 자가 대여기간을 1년 초과로 연장시 해투 신고 필요하나 대부분 추가적인 송금이 없어 신고 누락 → 규정 위반

** '23년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786건) 중 해투 신고절차 위반(426건)이 54.2% 차지

- 우리경제가 선진화·글로벌화 되었음에도 엄격한 사후관리 체계, 해외지사 설치자격 등 그대로 유지 → 과도한 규제로 작용

2. 주요 개선과제

- ① (정의조항 정비) IMF, OECD가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정성적 요인* 및 금전대여 상환기한을 판단기준에서 제외

* 국내-외국법인간 임원파견, 1년 이상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체결여부 등

- 주식·지분 취득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만 해외직접투자로 인정

- ② (신고절차 단순화) 10만불 이하 소액투자는 신고없이 투자 허용, 그 외 투자는 사전신고 대상으로 신고기한 일원화*

* (現) (5만불 이하) 1년 이내 / (50만불 이하) 3개월 이내 / (그 외) 사전신고
→ (改) (10만불 이하) 신고 예외 / (그 외) 사전신고

- ③ (사후관리 완화) 투자업종과 상관없이 300만불 초과 투자에 대해서만 연간 사업실적 보고의무* 부과

* 현재 투자업종이 부동산업인 경우 투자금액 상관없이 보고 必, 그 외는 200만불 이하 면제, 300만불 이하 투자현황표 같음, 300만불 초과 사업실적 보고 必

- 글로벌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지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설립·청산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

- ④ (해외지사 설치·관리방안 개편) 해외지사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설치의 자유화하되 해외지사에 대한 송금을 사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전환

참고 6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14조의2(현지법인등의 외화자금차입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현지법인등)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국내 다른 기업과 공동출자하여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기업, 출자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가장 큰 기업)가 현지금융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채권은행을 현지금융관련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18조에 따라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거주자의 해외지점(<u>제9-19조의 규정에서 정한 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을 제외한다</u>) ③~⑤ (생략) 제9-16조(적용범위) 거주자가 <u>외국에 당해 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이하 “해외지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및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u> 제9-18조(설치신고 등) ① <u>제1호 및 제2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u>	제7-14조의2(현지법인등의 외화자금차입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현지법인등)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국내 다른 기업과 공동출자하여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기업, 출자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가장 큰 기업)가 현지금융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채권은행을 현지금융관련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18조에 따라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거주자의 해외지점 ③~⑤ (현행과 같음) 제9-16조(적용범위) 거주자가 <u>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 및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에 당해 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이하 “해외지사”라 한다)를 설치·운영</u>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18조(설치신고 등) ①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가~나. (생략)

2.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가~카. (생략)

② <삭 제>

③ (제9-19조 제1항, 제9-20조 제1항에서 이동)

제9-19조(해외지점의 영업기금) ①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범위내에서 당해 해외지점에 영업기금(당해 해외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영업기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영업기금(제9-2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제외)을 지급할

한다.

1. (삭 제)

2. (삭 제)

② (생 략)

③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가 해외지사의 설치·운영·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19조(해외지점의 영업기금) ① (제9-18조 제2항으로 이동)

② (삭 제)

③ (삭 제)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건에 한하여 독립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매분기마다 해외지점으로의 지급내역등에 대해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9-20조(해외사무소의 경비) ①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설치비의 정산 결과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총액에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23조(해외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 ① 독립채산을 하는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9-20조(해외사무소의 경비) ① (제9-18조 제2항으로 이동)

②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9-23조(해외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 ①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해외지점으로부터 결산순이익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순이익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지점의 재무제표, 국내 본사의 연결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뒤 수령할 수 있다.

1. <u>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u> 2. <u>국내에 회수한 후 외국환은행에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거나 거주자계정에의 예치</u> 3. <u>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u> 제9-25조(해외지사에 대한 사후관리) ① (생략) ② 제9-19조, 제9-20조 및 제9-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외지점(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당해 해외지점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를 포함한다)을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휴·폐업 등으로 인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폐업의 기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⑥ (생략)	1~3. (삭제) 제9-25조(해외지사에 대한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18조, 제9-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당해 해외지점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를 포함한다)을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휴·폐업 등으로 인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폐업의 기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⑥ (현행과 같음)
--	---